

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명단

성명	생년월일	주소	현직	주요경력	비고
박주서	36.1.30.	마포구 아현동 627-67	구의원(시민보전위)	총신대졸 덕신문화사 대표	
정영태	30.8.31.	마포구 서교동 335-28		국민대졸 은평구청(사무관)	
김철기	53.5.17.	마포구 도화1동 삼성 APT 103-1203	공인회계사 (산동회계법인)	서울대졸 청운회계법인	
김광만	59.9. 7.	마포구 대흥동 325-78	공인회계사 (김광만회계사무소)	건대경영대학원졸 안진회계법인	
이병소	62.1. 3.	마포구 용강동 39-1 우석연립 A-101	공인회계사 (이병소회계사무소)	고려대경영대학원졸 안진·세화회계법인	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'95. 5. 8.
시민보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: '95.4.22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: '95.4.24.
- 다. 상정일자: 제2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
('95.5.8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 조만형 산업
과장)

- 가. 제안이유
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
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직제개편에 따라
동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등 변동사항
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- 나. 주요골자
○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
중 "지역교통과장"을 "교통행정과장"으로
변경(안 제4조제3항)
○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간사들
"물가계장"에서 "업무담당계장"으로 변
경(안 제10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김건재 전
문위원)

- 동 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제4조제3
항중 "지역교통과장"을 "교통행정과장"

으로 하고, 제10조제2항중 "물가계장"
을 "업무담당계장"으로 변경하는 것
임.

○이는 '95.3.14.조례 제284호로 제정
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
례와 '95.3.23. 규칙 제198호로 제정
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
례와 '95.3.23. 규칙 제198호로 제정
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에 근
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
없음.

4. 질의및답변요지: 없음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요지: 없음

8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: 1995. 4. 22.
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

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직제개편에 따라 동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등 변동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중 "지역교통과장"을 "교통행정과장"으로 변경(안 제4조제3항)
-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간사를 "물가계장"에서 "업무담당계장"으로 변경(안 제10조제2항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(1995.1.5. 법률제4877호) 제1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(1994.12.1. 대통령령제14422호)제42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(1995.3.23.

- 규칙제198호) 제19조 및 제24조
- 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- 5. 예산조치필요성 :예산조치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제3항중 "지역교통과장"을 "교통행정과장"으로 한다.
- 제10조제2항중 "물가계장"을"업무담당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4조(위원회구성)①(생략) ②(생략) ③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1인(시민보건의위원회 위원중 1인), 생활체육과장, 재무과장, 위생과장, 산업과장, 지역교통과장,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장, 교수,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위원회구성)①(현행과같음) ②(현행과같음) ③..... (생략) , 교통행정과장, (생략)
제10조(간사)① (생략) ②간사는 물가계장이 된다. ③(생략)	제10조(간사)①(현행과 같음) ②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 ③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'95. 5. 8.
시민보건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:'95. 5. 2. 마포구청장

나.회부일자:'95. 5. 2.

다.상정일자:제29회입사회제1차위원회('95.5. 8.)상정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김창수 청소과장)

가. 제안이유

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의 성질상 담기 어려운 깨진유